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11. 26(화) 10:00

# 제252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자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639호
- 나. 제 출 자 : 엄셋별 의원
- 다. 제출일자 : 2024. 11. 12.
- 라. 회부일자 : 2024. 11. 12.

## 2. 제안이유

출생축하금(첫째, 둘째아) 지원을 삭제하고 대상영유아 가정에 금천아이성장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상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나. 조문 내 띄어쓰기 수정 (안 제5조).
- 다. 출생축하금 중 첫째아, 둘째아 지원 규정 삭제(안 제6조).
- 라. 금천아이성장지원금 지원기준 등 신설(안 제6조의2).
- 마. 환수조치에 금천아이성장지원금 내용 신설(안 제8조).
- 바. 별지 제1호 서식 중 출산을 출생으로 수정(안 별지 제1호).
- 사. 별지 제2호 서식 성장지원금 신청서 신설(안 별지 제2호).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 제4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24. 11. 15. ~ 2024. 11. 21.

## 5. 검토의견

### 가. 개정 이유

본 개정안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을 지원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의원 발의됨.

### 나. 주요 내용

#### 1)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금천아이성장지원금이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으로 정의함

#### 2) 조문 내 띄어쓰기 수정 (안 제5조).

#### 3) 출생축하금 중 첫째아, 둘째아 지원 규정 삭제(안 제6조).

- 출생아 대상 현금 지원정책 사회보장제도 재검토(보건복지부 2024.1.9.) 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 4) 금천아이성장지원금 지원기준 등 신설(안 제6조의2).

-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2세부터 4세인 영유아로 함

#### 5) 환수조치에 금천아이성장지원금 내용 신설(안 제8조).

#### 6) 별지 제1호 서식 중 출산을 출생으로 수정(안 별지 제1호).

#### 7) 별지 제2호 서식 성장지원금 신청서 신설(안 별지 제2호).

#### 다.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자녀 양육에 지원되는 수당 등이 2세부터 급격히 줄어들어 이를 보완하고자 금천아이성장지원금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4년 기준	0세 ~ 11개월	12개월 ~ 23개월	24개월~ 35개월	36개월~ 85개월	86개월~ 95개월
첫만남이용권 (회)	(출생아 지원) 첫째 : 바우처 200만원, 둘째 : 바우처 300만원)		-		
부모급여 (월)	월 100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46만원)	월 50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2.5만원)	-	-	-
가정양육수당 (월)	-		월 10만원 (어린이집 이용시 ✕)		-
아동수당 (월)	월 10만원				

#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80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2023. 8. 8.>

1. ~ 3. (생략)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3.>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7., 2011. 8. 4., 2020. 12. 2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20. 12. 29.>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6.>

[전문개정 2007. 10. 17.]